

노동정책연구
2008. 제8권 제4호 pp.55~80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특수형태근로부문의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주**
최윤영***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종사상의 성별 특성이 뚜렷한 ‘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인적 특성, 소득실태 등을 분석하고,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성별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연수, 연령, 근무지 및 상해보험 가입 여부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미콘운송종사자의 경우 근무지와 상해보험 가입 유무만이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근무지 이외에 연령, 교육연수, 자녀수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별 특성, 소득, 소득결정요인

논문접수일: 2008년 9월 4일, 심사의뢰일: 2008년 9월 8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19일

* 본 연구는 2007년 근로복지공단의 연구용역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sjcho@kwidimail.re.kr)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yychoi@bu.ac.kr)

I. 서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관상 자영인이나 경제적으로 특정사업주에 종속되거나(경제적 종속성) 특정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사용상 종속성) 자영인과 근로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취업자를 총칭한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 파견, 도급 등의 취업형태와 더불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하나로서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문제는 독립 자영인으로서 경제법적인 보호가 불충분하고, 또한 근로자 성격을 일부 가지나 자영인의 지위에 있어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 동안의 여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당한 계약해지, 재해보상 미흡, 노동3권 불인정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중간적 성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학계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및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보호대책과 함께 단체법적 보호방안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지난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는 제1차 기본합의에서 “특수형태종사자 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 한다”고 합의하였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가 수차례에 걸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다(노사정위원회, 2007).

결국 2006년 12월 13일자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7년 12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보험법적 보호와 실태 등에 관련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로 4개 직종이다. 4개의 직종 가운데 레미콘운송종사자는 주로 남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며, 골프장경기보조원은 주로 여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다. 실제 종사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레미콘운송종사자의 경우 남성이 전체 근로자의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여성이 전체 근로자의 96%를 차지하고 있다(본문의 표 1 참조). 이는 근로 기능이 상이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문화적·생물학적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두 업종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보다는 산업재해율이 높다. 산재보험료는 ‘기준임금액(연)×보험료율’인데, 이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교사는 7/1000인 반면, 골프장경기보조원은 20/1000, 레미콘운송종사자는 34/1000이다. 따라서 골프장경기보조원과 레미콘운송종사자가 4개 직종 중 상해위험률이 높고, 성별 차이로 인해 근로 기능이 상이할 것으로 예측하여 두 부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이 시행될 경우 그 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소득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앞서 설명한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소득실태 및 관련 현황을 분석·평가하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실증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그동안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연구들은 실태조사나 특수형태근로자

의 권리,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 직업 분리에 대한 임금격차의 연구의 일부분 등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특정업종에 따른 성별 차이와 임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처럼 관련 연구가 미비하며 특수형태근로자가 정규직이나 자영업자와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자와 정규직, 자영업자 등의 임금결정요인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외관상 자영인이나 경제적으로 특정사업주에 종속되거나(경제적 종속성) 특정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사용상 종속성) 자영인과 근로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임금결정요인 등과 비교해 보는 것은 특수형태근로 부문의 종사자의 소득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연구로 안주엽 외(2008)가 있으며, 남자 임금근로자의 경우 교육연수, 근로연수, 경력, 결혼 여부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여성은 교육연수, 결혼 여부, 근속연수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연령, 교육수준, 경력, 기혼 여부가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남성의 경우는 남성 임금근로자와 같은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지역과 고용주인지 아닌지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도 임금(소득)에 영향을 달리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렬·최강식(200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경우 교육수준, 연령, 자영업 종사기간 등이 소득과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임금, 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육연수,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특수형태근로를 통하여 얻게 될 생애소득 흐름(lifetime income stream)의 현재가치(present value)가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경제 주체는 일반근로보다 특수형태근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불완전성(imperfection)으로 인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이 특수형태근로를 저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가족 배경이 특수형태근로의 결정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Ⅲ.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규모와 인적 특성

1.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규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에 관한 자료는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노동부의 사업체근로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정부 통계에서 나타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종사자의 규모와는 다르다. 이는 자영인과 근로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특수형태근로의 특성상 그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고, 통계상의 조작적 정의, 업계 종사자수로 파악한 사실상의 정의 및 법적인 정의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양한 정의에 입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특수형태근로를 비전형 근로의 하나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동 조사는 비정규 근로를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및 비전형 근로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특수형태근로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와 함께 비전형 근로의 한 유형으로 파악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특수형태근로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 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형태”로 정의된다.

<표 1>은 2002년 이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나타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8월 조사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표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및 비율

(단위: 천명, %)

	임금근로자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		일일근로 등	
	전 체		구성비		구성비	형태	구성비		구성비
2005. 8.	14,968	118	0.8	431	2.8	633	4.2	859	5.7
2006. 8.	15,351	131	0.8	499	3.3	617	4.0	842	5.5
2007. 8.	15,882	174	1.1	593	3.7	635	4.0	970	6.1

주: 일일근로 등은 가정내 근로를 포함.

자료: 이인재(2007)에서 필자가 재구성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는 63만 5,000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년도 동월 대비 1만 8,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는 연도마다 변화가 있어 뚜렷한 증감 추세를 관찰하기 어렵다. 2002년과 2004년 조사에서는 70만 명 이상의 종사자수를 보이고 있지만 2003년의 경우에는 60만 명으로 최저 수준을 보인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7년 8월의 경우 약 4.0%이다. 종사자 총수와 마찬가지로 2002년과 2004년 조사에서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2003년의 경우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표 2>는 통상 특수형태근로로 분류되는 주요 직종의 종사자수를 업계 자료를 통해 추산해본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정부 통계보다는 많은 약 9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에는 기타 특수형태근로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직군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 종사자수로 파악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이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특수형태근로 직종별 종사자 규모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종사자(명)	19만 5천	10만	1만 4천	2만 3천
기준 시점	2006. 2	2004	2004	2006. 6

주: 이인재(2007)에서 필자가 재구성함. 이외에 화물기사, 덤프기사, 퀵서비스, A/S기사, 검침원, 자동차판매원, 간병인, 애니메이터 등도 포함됨.

〈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별 구성

(단위: 천명, %)

성 별	종사자수	비 율
남 성	214	33.7
여 성	421	66.3
전 체	635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 2007. 8.

아직 특수형태근로의 통계적 정의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다른 고용형태와 구분짓는 한계 개념으로서의 법적인 정의 역시 형성 단계에 있으므로 자료에 따른 규모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자료를 통한 규모의 분석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점은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근로가 중요한 근로형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4개 업종은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 9월부터 2년간 중점적으로 관리해 온 4개의 업종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이다. 기타 관련 4개 업종이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화물운송종사자, 덤프운송자, 킷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송종사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별 구성(2007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사용, 표 3 참조)을 살펴보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3만 5,000명 중 남성은 21만 4,000명이며 여성은 42만 1,000명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남성의 비율은 33.7%이며 여성의 비율은 66.3%이다. 따라서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1/3이 남성, 2/3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레미콘 기사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성별 구분이 뚜렷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정인수, 외 2006; 이정식, 2005).

2. 레미콘운송종사자의 특성

레미콘운송종사자의 경우 운반비 덤핑 문제와 ‘소사장제’라고 불리는 하도급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은 계속해서 레미콘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운반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레미콘회사들은 운반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 중에서 사용종속성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종속관계를 약화시키고, 소사장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성을 형식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작업과정상 지휘명령관계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레미콘 산업의 특성상 ‘화물자동차운송자’나 ‘덤프트럭종사자’와 달리 특정 회사와 전속적 관계에서 일을 하는 레미콘기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성이 더 강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이인재 외, 2008).

레미콘운송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의 소득은 운반비이다. 레미콘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비금속광물 제조업에 속하며, 소분류로는 시멘트 제품의 레미콘 제조업에 해당한다. 레미콘의 운반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믹서 트럭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에 의한 것이 원칙이며 포장용 콘크리트에 한하여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운반 단가는 1m³당 책정된 단가에 레미콘 차량의 적재 가능 용량인 6m³를 곱하여 계산된다. 여기에 보통 운행 거리당 책정되는 유류보조비를 더해서 1회전당 단가를 계산한다. 운반 단가는 지역별·권역별·사업장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 28,000~35,000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유류보조비는 보통 1km당 0.6리터를 보조해 주거나 1km당 500~600원의 정액을 보조해 준다. 이는 현재 레미콘트럭의 연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1회전당 보통 12,000~14,000원 정도의 유류보조비를 받는다. 그러므로 가장 적게 받는 경우로 보면 단가 28,000원에 유류보조비 12,000원을 더하여 1회전당 40,000원 정도이며, 가장 많이 받는 경우로 보면 단가 35,000원에 유류보조비 14,000원을 더하여 1회전당 49,000원 정도가 된다. 2001년 파업 이전의 단가 수준인 24,000~27,000원과 비교해 보면 약 80%가 인상된 것이다(정인수 외, 2007; 최윤영 외, 2008).

운반비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운반한 물량을 레미콘기사가 제출한 청구서를 회사의 검수량과 대조, 정산한 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3. 골프장경기보조원의 특성

골프장경기보조원은 회사의 사업 조직적 구성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고 회사에 의한 지시와 복종관계가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다를 없는 근로자로 인정된다(최윤영 외, 2008).

이들은 단순 경기보조 외에 신속한 ‘경기운영 독려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골프장의 수입 증대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업무이다. 회사는 이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고 또한 경기보조원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정규직원에게 의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기보조원은 수수료(캐디피)를 지급받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지만, 매일 골프장에 대기하여 순번에 따라 고객팀을 배정받아 근로한다는 점과, 휴가도 회사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일종의 징계 제도인 별당제에 의하여 경기보조 업무와 무관한 골프장의 청소와 잔디보호 작업 등을 해야 하는 점 등을 통해서 볼 때 경기보조 서비스 외에 회사에 사실상 취업되어, 회사 업무에 편입되어 있으며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지휘명령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집의 형태가 학원을 통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모집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은 캐디피이다. 캐디피의 액수는 골프장마다 다르다. 골프장은 회원 수를 몇 명 확보하느냐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회원이 적으면 예약하기가 수월하므로 등급이 높고, 반대로 회원이 많으면 예약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므로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캐디피도 골프

- 2) 레미콘운송종사자에 대하여 IMF 외환위기 이후 레미콘 업체의 도산과 건설 경기의 침체에 따른 안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그 지위가 부인되고 있다. 그리고 레미콘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자들로 운반사업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매년 반복될 집단운송 거부 등으로 레미콘 산업의 환경이 현재보다 더욱 열악해 도산할 우려가 높다. 현재는 회사와 직원이 실질적 종속관계가 아닌 계약서상 대등한 관계이다. 전국레미콘운송협회의 확인에 의하면, 전국레미콘운송협회의 회원자수가 8,000명이며, 노동조합 주장의 활동사업장이 45개라는 데 대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활동하는 것으로 15여개 미만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전국건설운송노조’의 경우 운반업자 스스로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전국레미콘운송협회’는 스스로 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전국레미콘운송협회보다 전국건설운송노조는 전체 운반사업자에 있어 그 대표성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장 등급에 따라 70,000만원부터 80,000만원, 90,000만원, 10만 원까지 차등화 되어 있다.³⁾ 캐디피는 자영사업자인 경기보조원의 자유 활동에 따른 대가이다. 법적인 제한이 있지 않은 이상 독립사업자는 독자적인 사업 주체로서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보조요금의 결정은 노무가 공급되는 골프장과 노무를 직접 사용하는 고객 그리고 노무의 공급자인 경기보조원이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고객과 경기보조원이 주된 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최윤영 외, 2008) 실제로는 골프장이 사실상 직접 결정하고 있으며, 노무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골프장의 사용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IV. 연구의 대상 및 모형의 설정

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 실증적 분석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2007년 「특수형태근로자 소득실태 조사·분석」의 원자료(raw data)⁴⁾ 중 골프장경기보조원과 레미콘운송자를 대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바

3) 예를 들어, A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수입은 캐디피 8만 원으로 하루 몇 라운드에 투입되는가에 달려 있다. 성수기 때는 보통 하루에 1~2라운드로 월평균 200만~250만 원 정도, 비수기 때는 한 달에 4~5라운드 해서 30만 원 정도이며, 전체 연봉으로 환산하면 1,500만~1,800만 원 정도가 된다. B 골프장의 경우에는 A 골프장의 경우보다 낮다. 소득이 월평균 180만~200만 원인데 성수기에는 최고 240만 원에 이르고, 연봉으로는 약 2,000만~2,4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나 강한 노동강도로 인하여 무릎관절을 다친 경기보조원이 많다(정인수 외, 2007, 최윤영 외, 2008).

4) 조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의 각 종사자 현황(2007년 11월 현재)을 토대로 비례층화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 활용된 방문 면접조사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각 지사의 실태조사 요원을 선별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 실시 전에 현장조사 관련 사전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8년 1월 3일~1월 15일(2주)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조사대상 표본은 총 2,069명이며, 본 조사의 허용오차는 95% ±2.14%이다.

당으로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총 조사대상 2,069명 중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94.59%에 해당하는 1,957명이었다. 각 직종별로 보면, 레미콘운송종사자는 총 107명 중 107명이 참여하여 100.00%의 비율을 보였고, 골프장경기보조원은 총 160명 중 134명으로 83.75%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는 총 1,090명 중 1,027명으로 95.09%, 학습지 교사는 총 721명 중 689명으로 96.77%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 및 <표 5>와 같다.

먼저 레미콘운송종사자를 살펴보면, 성별은 응답자 전체가 남성이었으며, 연령은 최소 24세에서 최대 60세로서 평균 45.15세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17명(16.19%), 40대 59명(56.19%), 50대 이상 29명(27.62%)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중졸(중퇴 포함) 14명(13.33%), 고졸(중퇴 포함) 85명(80.95%), 대졸(중퇴 포함) 6명(5.71%)이었다. 응답자들의 91.51%(97명)가 기혼 상태였으며, 이들 중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36.46%(35명)로 조사되었다.

레미콘운송종사자는 관련 업종 총 경력이 평균 130.36개월로 약 10년 10여 개월이었는데, 최소 12개월(1년)에서 최대 360개월(30년)로 응답자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근무지는 대도시 23명(23.56%), 중소도시 57명(63.33%), 군부 10명(11.11%)으로 도시 권역 소재가 많았다.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성별은 남자 5명(3.76%), 여자 128명(96.24%)으로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았다. 연령은 최소 20세부터 최대 54세까지로 평균 31.38세였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 57명(42.54%), 30대 66명(49.25%), 40대 11명(8.2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고졸(중퇴 포함) 66명(50.38%), 대졸(중퇴 포함) 65명(49.62%)이었으며, 혼인 여부는 기혼 34명(25.95%), 미혼 91명(69.47%), 이혼 6명(4.58%)로 나타났고, 맞벌이를 하는 응답자는 55.81%(24명)이었다. 근무지 도시화 수준은 대도시 1명(0.93%), 중소도시 80명(74.07%), 군부 27명(25.00%)으로 중소도시 권역 소재가 많았다. 한편, 응답자들의 관련 업종 총 경력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04개월(17년)로, 평균 62.13개월(약 5년 2개월)로 나타났다.

〈표 4〉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일반적인 특성

		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장경기보조원	
		응답빈도	%	응답빈도	%
성별	남자	106	100.00	5	3.76
	여자	0	0.00	128	96.24
연령대	30대 이하	17	16.19	57	42.54
	40대	59	56.19	66	49.25
	50대 이상	29	27.62	11	8.21
학력수준	고졸(중퇴 포함)	99	94.29	66	50.38
	대졸(중퇴 포함)	6	5.71	65	49.62
혼인 여부	기혼	97	91.51	34	25.95
	기타	9	8.49	97	74.05
맞벌이 여부	예	35	36.46	24	55.81
	아니오	61	63.54	19	44.19
근무지	대도시	23	25.56	1	0.93
	중소도시	57	63.33	80	74.07
	군부	10	11.11	27	25.00

〈표 5〉 레미콘운송종사자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연령 및 경력

레미콘운송종사자	응답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105	24	60	45.15	6.54
총 종사경력[개월]	104	12	360	130.36	71.09
현 사업장경력[개월]	101	12	300	84.33	65.02
골프장 경기보조원	응답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령[세]	134	20	54	31.38	5.64
총 종사경력[개월]	127	6	204	62.13	40.52
현 사업장경력[개월]	126	1	204	40.37	36.92

2. 모형 설정 및 변수 설명

가. 모형 설정: 소득함수의 도출

개인의 적정 소득수준의 결정은 개인의 효용함수의 극대화 내지는 미래수익

의 현재가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Rosen, 1977; Card, 1999). 논의를 위해서 미래수익의 현재가치인 DPV(Discount Present Value: 이하 DPV)의 극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교육수준을 s , 이에 따른 소득을 $y(s)$ 라고 할 때, 교육투자로 인해 미래소득의 현재가치인 $V(s)$ 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V(s, z) &= \int_s^n y(s, z) \cdot e^{-rt} dt \\ &= \frac{y(s, z)}{r} (e^{-rs} - e^{-rn}) \end{aligned} \quad (2-1)$$

여기서 z 는 교육 이외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등의 변수를 나타내고, r 은 할인율, n 은 각 교육수준에서의 최대 근로연령을 나타낸다. DPV를 극대화하기 위한 1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V'(s) &= \frac{y'(s, z)}{r} (e^{-rs} - e^{-rn}) - y(s, z)e^{-rs} \\ &= 0 \end{aligned}$$

이 식을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y(s, z) = \frac{y'(s, z)}{r} [1 - e^{-r(n-s)}]$$

이 1차 조건의 좌변은 추가적인 교육으로 발생하는 한계비용(marginal cost of additional schooling), 즉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소득(opportunity cost of foregone earnings)이다. 우변은 추가적인 교육으로 인해 얻게 되는 한계이득(marginal benefit of additional schooling), 즉 $y'(s)$ 를 현재가치화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가 일정 기간(n)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e^{-rn})은 무시하여도 되고, 식 (2-1)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ln y(s, z) = \ln r V(s, z) + rs \quad (2-2)$$

5) DVP의 극대화 대신 개인의 효용함수 극대화를 추구하여도 같은 1차 조건에 도달할 수 있다.

식 (2-2)는 위와는 전혀 다른 가정과 도출 과정을 거친 Mincer(1974)의 임금 방정식과 매우 유사하다. Mincer는 모든 개인은 생애 전체에 있어 같은 효용을 누리며, 단지 어떤 개인은 초기 소득을 포기하고 교육에 투자하여 말기에 더 높은 소득을 누리게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임금방정식을 도출하였다.

$$\ln y_i = \ln y_0 + r s_i + a_1 x_i + a_2 x_i^2 + e \quad (2-3)$$

여기서 x 는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변수이다. 이 식은 수많은 실증분석에서 적합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Heckman and Polachek, 1974; Murphy and Welch, 1990). 그러나 앞에서 도출된 소득함수를 실증분석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교육수준 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같은 교육수준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다. 즉 식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수준만이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 성취 동기, 가족 배경 등, 교육 이외의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Mincer(1974)가 사용한 소득함수 식 (2-3)을 추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측정한다면 교육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과대 추정(overestimate)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식 2-2)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자.

$$\ln y_i = \beta_0 + \beta_s s_i + \beta_a A_i + u_i \quad (2-4)$$

여기서 A_i 는 관찰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자. A_i 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교육연수만을 가지고 OLS로 추정할 경우 교육연수 계수의 probability limit은 다음과 같아진다.

$$plim \hat{\beta}_s = \beta_s + \beta_a \hat{\beta}_{AS}$$

여기서 $\hat{\beta}_{AS}$ 는 능력(ability)을 S 에 대해서 (가상적으로) 회귀분석할 경우 S 의 계수 값이다. $\hat{\beta}_{AS} > 0$ 이므로 만약 임금방정식에서 ‘능력’ 변수를 제외하

고 회귀분석을 실시할 경우, $\beta_s < \hat{\beta}_s$ 이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수익률(= β_s)은 과대추정(overestimate)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관찰 불가능한) 능력의 代變수(proxy)가 될 수 있는 지능지수(I.Q.)를 사용하거나, 부모의 학력수준을 대신 사용하거나, 혹은 일관성 쌍둥이 자료를 이용하여 능력이라는 고정 효과를 제거(fixed effect method)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식 (2-2)가 적정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1차 조건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식 (2-2) 혹은 식 (2-3)을 사용한 실증분석은 교육수준(s)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수준의 결정은 내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⁶⁾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을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총 소득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함수에 교육연수(혹은 교육연수의 제곱), 경력, 경력의 제곱 등을 포함시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특수형태근로자의 임금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교육연수 이외의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가족 배경(맞벌이 유무, 자녀수), 기타 특성(근무지(지역적 특성), 상해보험 가입 유무, 산재보험 적용인지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⁷⁾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근로시간 역시 임금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내생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연간 임금소득의 대수치를 사용하였다.

6) 이 밖에도 selectivity bias 문제, cohort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다.

7) 본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소득함수는 전통적인 Mincer류의 소득함수에서 생략되고 있는 능력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능력 편의(ability bia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배경(family background) 등의 변수를 통제한 후 소득함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개인의 능력, 성취 동기, 가족 배경 등 교육 이외의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Mincer(1974)가 사용한 소득함수를 추정한다면 효과가 과대추정(overestimate)되는 것이다. 가족 배경을 나타내는 변수로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맞벌이 유무와 자녀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료의 보완과 지속적인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상기 변수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구성된 것이다.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의 변수로서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산업 및 직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한 산업 및 직종은 서비스업과 서비스직이며, 고용형태가 애매하고 사업체 규모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변수로 사용하지 않았다.

나. 변수의 설명⁸⁾

1) 소득

레미콘운송종사자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연평균 총 운반비에서 업무관련 지출 비용을 뺀 금액을 사용하였다.⁹⁾ 그동안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소득을 임금으로 간주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입을 임금으로 표현하는 대신 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른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바람직하다(이승렬 외, 2005).

여기에서 소득이라 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회사 또는 고객이 지불하는 금품(이하 수입이라고 한다)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소득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때 레미콘운송종사자의 연평균 업무일수는 최소 6일에서 최대 351일까지 평균 293.04일이었다. 연평균 총 운반비(사업소득)는 평균 3,663.10만 원으로 최소 380만 원에서 최대 6,500만 원까지 응답자 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8) 본 연구에서 구성한 변수는 한국의 선행연구 또는 문헌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와 관련한 문헌자료가 미비하여 연구자가 외국의 자료와 유관기관, 관련 학계인사 등과의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개념, 조작화한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9) 연평균 소득을 사용한 것은 월급, 주급, 일급, 수시 등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총소득에 대한 산정방식은 운반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루베(1m)로 계산하는 성과급의 형태 등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레미콘운송종사자들에게 가장 일이 많은 성수기는 10월(31명, 32.0%)과 5월(20명, 20.6%), 11월(17명, 17.5%)이었으며, 가장 일이 적은 비수기는 1월(48명, 50.0%), 2월(37명, 38.5%)로 조사되어 월 단위 급여가 다르므로 연평균 소득을 사용하였다.

월평균 총 운반비(사업소득)는 평균 319.37만 원이었는데 최소 12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의 월 소득을 보였다. 또한, 레미콘운송종사자들의 연평균 업무 관련 지출비용은 평균 1,372.32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 총 사업소득에서 연평균 업무관련 지출비용을 뺀 연평균 순사업소득은 평균 2,352.70만 원으로 나타나 총 사업소득과 비교하여 대략 35.18%의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연평균 총소득액(사업소득)은¹⁰⁾ 평균 2,203.06만 원으로 최소 75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응답자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연평균 업무관련 지출비용은 평균 186.86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연평균 총 사업소득에서 연평균 업무관련 지출비용을 제외시킨 연평균 순사업소득은 평균 2,018.96만 원으로 나타나 총 사업소득과 비교하여 대략 8.36%의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고 있었다.

〈표 6〉 레미콘운송종사자의 소득

	응답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평균 총운반비(사업소득) [만원]	105	380.00	6,500.00	3,663.10	1,213.26
연평균 업무관련 지출비용 [만원]	99	0.00	4,000.00	1,372.32	922.49

〈표 7〉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소득

	응답빈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연평균 총소득액(사업소득) [만원]	134	750.00	4,000.00	2,203.06	490.18
연평균 업무관련 지출비용 [만원]	122	0.00	800.00	186.86	187.95

10) 연평균 소득을 사용한 것은 주급, 일급, 수시 등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총 소득에 대한 산정방식은 고정급, 라운딩 횟수에 따른 성과급(캐디피)의 형태 등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캐디피는 주로 회사에서 결정되고 있었으며(108명, 80.60%), 고객이 직접 지급(117명, 87.31%)하고 있었다.

2) 경력

응답자의 관련업종 총 경력을 변수로 활용하였다.¹¹⁾ 레미콘운송종사자는 관련 업종 총 경력이 평균 130.36개월로 약 10년 10여 개월이었는데, 최소 12개월(1년)에서 최대 360개월(30년)로 응답자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108개월(9년)에서 126개월(10.5년) 구간에 가장 많은 18명이 분포하였다.

3) 교육연수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학력수준을 교육연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레미콘운송종사자의 학력수준은 중졸(중퇴 포함) 14명(13.33%), 고졸(중퇴 포함) 85명(80.95%), 대졸(중퇴 포함) 6명(5.71%)이었다. 골프장경기보조원의 학력수준은 고졸(중퇴 포함) 66명(50.38%), 대졸(중퇴 포함) 65명(49.62%)이었다.

4) 기타 변수

기타 변수로는 교육연수 이외의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가족 배경(맞벌이 유무¹²⁾, 자녀수), 기타 특성(근무지(특별시·광역시 여부), 상해보험 가입 유무, 산재보험 적용대상 인지 유무) 등을 사용하였다.

소득에 대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t* 통계량 값은 2.373, 자유도는 212이었다. *p*-value가 0.019로, 매우 유의한 값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별이 다른 집단 간의 임금차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성별에 따른 연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¹³⁾

11) 노동시장에서 실제 관찰 불가능한 경우, 실제 ‘연령-교육연수-6’을 사용한다(Hunger and Solon, 1987). 이 식은 실제 수많은 실증분석에서 적합도가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Heckman and Polachek, 1974; Murphy and Welch, 1990).

12) 여기서 가족 배경(혼인 유무, 맞벌이 유무)에 대한 정보를 임금함수 추정에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첫째, 관찰 불가능한 능력, 배경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대신 가족 배경 변수를 임금함수에 교육연수와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 배경 변수가 당사자의 교육연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당사자의 노동시장 임금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교육연수의 도구 변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13) 또한 소득에 대해 업종(레미콘운송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하였다. *t* 통계량 값은 2.613, 자유도는 212이었다. *p*-value가 0.010으로,

V. 분석 결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임금의 대수치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 ln(소득)	Coefficient (Std. Err.)
개인의 특성	C (상수항)		8.321737*** (0.4900501)
	경력 제공/100		0.1205718 (0.1024132)
	경력연수		-0.03196 (0.0268162)
	교육연수		0.2314541** (0.0948552)
	교육연수 제공		-0.0101039** (0.004184)
	성별		-0.2938439** (0.1360927)
	연령		-0.0225703*** (0.0084827)
가족 배경	맞벌이 유무		-0.0926543 (0.0955349)
	자녀수		0.043433 (0.0676092)
기타 특성	근무지		-0.0419238*** (0.0147321)
	상해보험 가입 여부		-0.2076132** (0.0997523)
	산재보험 적용인지 유무		-0.0510018 (0.0917469)
Prob>F			0.2408
R ²			0.168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매우 유의한 값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업종이 다른 집단 간의 임금차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업종에 따른 연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위의 <표 6>과 <표 7>에서 보듯이 보면 레미콘운송기사의 연봉 평균(3,663)보다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연봉 평균(2,203)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앞의 <표 8>은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 전체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연수, 교육연수 제공, 성별, 연령, 근무지, 상해보험 가입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추가적인 교육연수에 따른 한계수익률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정 연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을수록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소득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가 광역시가 아닐수록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력연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경력이 소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9>는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각각의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레미콘운송종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근무지와 상해보험 가입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투자수익률에 해당하는 교육연수 및 경력연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레미콘운송종사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경력이 소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무지가 광역시가 아닐수록 소득이 증가하였으며, 상해보험에 가입자가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레미콘운송종사자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재해율이 높은 직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소득결정에 있어 상해보험 가입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육연수, 연령, 자녀수, 근무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투자수익률에 해당하는 교육연수의 계수는 0.16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연수의 제공은 -0.006으로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추가적인 교육연수에 따른 한계수익률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정 연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경력연수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경력이 소득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어릴수록 근무지가 특별시·광역시가 아닐수록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표 9〉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ln(소득)	
		레미콘운송종사자 Coefficient (Std. Err.)	골프장경기보조원 Coefficient (Std. Err.)
개인의 특성	C (상수항)	8.443362*** (2.433816)	8.335205*** (0.3765609)
	경력제공/100	0.1946196 (0.1429521)	-0.1094938 (0.2523506)
	경력연수	-0.0552403 (0.0397858)	0.001781 (0.0446998)
	교육연수	0.2699557 (0.3641134)	0.1650463** (0.0658202)
	교육연수 제공	-0.0131056 (0.0147325)	-0.0061525** (0.0028689)
	연령	-0.0196227 (0.012137)	-0.0324807** (0.0093465)
	가족배 경	맞벌이 유무	-0.1837326 (0.1397704)
자녀수		0.0064362 (0.1092658)	0.1307447** (0.0674274)
기타 특성	근무지	-0.0389124** (0.0187253)	-0.0512653* (0.025351)
	상해보험 가입 여부	-0.246653* (0.1422695)	-0.1077757 (0.0999757)
	산재보험 적용인지 유무	-0.0264479 (0.1349168)	-0.1516519 (0.0947639)
Prob>F		0.2408	0.0335
R ²		0.1684	0.483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미콘운송종사자와 비교될 수 있는 변수는 자녀수이다.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골프장경기보조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결정의 자녀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특수형태근로가 상이한

점에 주목하여 두 근로집단 간의 특징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 자료에 의한 분석에 기초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대체로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각종 관련 통계로부터 재차 확인되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성별로는 비중이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 전체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별, 교육연수, 연령, 근무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을 각각 나누어서 실증분석한 결과, 레미콘운송종사자의 경우는 근무지와 상해보험 가입 유무만이 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상해보험 가입자가 소득이 낮다는 결과는 레미콘운송종사자가 재해발생률이 높은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며 소득 또한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해보험 가입 유무는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 또는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1차적 소득의 결정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 근무지 이외에 연령, 교육연수, 자녀수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공히 임금과 소득에 교육연수,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특수형태근로자인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 또한 소득을 결정하는 데 교육연수와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영자의 경우 남성은 남성 임금근로자와 같은 교육연수, 연령, 경력 등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지역과 고용주 여부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특수형태근로자를 업종에 따라 분석한 결과 레미콘운송종사자의 경우는 근무지와 상해보험 가입 여부가 골프장경기보조원은 연령, 교육연수 이외에 자녀수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완전한 추정치를 구하는 데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관찰 불가능한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전에는 완전한 추정치를 구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보다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새롭고 논리적인 설정 및 업종에 따른 다각화 등의 문제가 반영할 경우 본 연구의 결과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약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을 비교분석하는 1차적인 시도라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이들의 소득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후 분석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도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많은 통계적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재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제3회 한국노동패널 학술심포지엄, 2001.
- 금재호 외.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김소영.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법적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0.
- 김소영·김태홍. 『종사자로 보기 어려운 여성취업자의 실태 및 개선방안』. 노동부 여성정책자료 3, 1999.
- 김영두. 「특수고용직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분석」. 『노동사회』 119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 김영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호방안」. 한국사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 김형배·박지순.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
- 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자료」. 노사정위원회, 2007.
- 박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종사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자료집』. 2003.
- _____. 「레미콘운송기사와 경기보조원의 종사자성에 관한 검토」. 한국노동법

- 학회, 『노동법학』 14(2000): 21~52.
- 박찬임.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서병선 · 임찬영. 『한국근로자의 직종선택과 성별 임금격차』.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심포지엄, 2000.
- 안주엽. 「특수고용관계종사자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안주엽 · 남재량 · 이인재 · 성지미 · 최강식. 『노동과 차별 II: 인식과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윤조덕 외. 『비정규직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실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확대』.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이승렬 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 2』.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이승렬 · 최강식. 「자영업부문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7(4)(2007): 59~109.
- 이인재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정성미. 「여성 재취업 고용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15)(2006. 3): 39~50.
- 정인수 외.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 · 쟁점 ·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조용만. 『고용차별규제법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토론문-차별 개념에 관한 국제기준』. 한국노동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3.
- 조준모. 「교육산업종사자 효율적 보호방안-학습지교사 중심으로」. (주)중앙경제, 2004.
- _____. 「특수형태근로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보험설계인, 골프경기 보조원 및 학습지교사에 관한 실증분석」. 『노동정책연구』 3(1)(2003): 31~65.
- _____.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도서출판 해남, 2007.
- 최강식 · 정진호. 「한국의 학력간 소득격차 추세 및 요인분해」. 노동경제학회

월례발표 논문, 2002.

최윤영·조선주·이종환·김자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실태조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보고서,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황수경. 「직종특성과 성별 직종분리 : 미국노동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01년·가을호): 1~30.

Ashenfelter, Orley & Cecilia E. Rouse. "Income, Schooling and Ability: Evidence from a New Sample of Identical Twin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3(1998): 253~284.

Atkinson, John. "Flexibility or Fragmentation? The United Kingdom Labour Market in the Eighties." *Labour and Society*, 1987.

Becker, G. S. *Human Capital*. New York: NB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Heckman, J. J. & Polachek, S. "Empirical Evidence on the Functional Form of the Earnings-Schooling Relationship."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9(1974): 346.

Lam, D. "Marriage Markets & Assortative Mating with Household Public Goods: Theoretical Results and Empirical Implic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1988): 462~487.

Tullock, Gordon.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5(1967): 224~232.

An Analysis on the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Sun-Joo Cho · Yun-Young Choi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s income level and states with an emphasis on determinants of their income.

Because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recognize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s as those defined as workers by the Labor Standard Act, 'Measures to appl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o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need to be come up with.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shows the followings: It is estimated that private accident insured, young, high-educated people result in higher income. But, several questions merit discussion. This paper lays the foundation for future works on improving policies of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s.

Keywords : special employments, gender, income.